

1. 개정이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안 제53조의2제2항제3호·제4호 신설)

-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등으로 정함.
-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교육의 강

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 등으로 정함.

나.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 명확화(안 제53조의5제1항)

종전에는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하던 것을, 대한민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및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으로 변경함.

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53조의6 신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하여 재한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통보의무 면제 대상 업무 추가(안 제70조의2제5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 등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마.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 확대(안 제73조)

종전에는 출입국관리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4. ~ 7. 14., 2026. 8. 21.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3호 중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교부

7. 그 밖에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장의 제목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영 제48조제1항제3호”를 “영 제48조제1항제5호”로 한다.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3조의4제1항제6호 중 “결혼이민자 등”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53조의5의 제목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를 각각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2까지로 하고, 제5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이 정한다.

제53조의8(중전의 제53조의7)제2항 중 “제53조의6”을 “제53조의7”로 한다.

제53조의12(중전의 제53조의11) 중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를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로 한다.

제70조의2제5호 중 “법률에”를 “법률 및 「선원법」에”로 한다.

제7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 :”를 “경우:”로, “수입인지”를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표”를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발행번호 (No.)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취소 내용 Details of Revocation	
취소 사유 Reasons for Revocation	
적용 법조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1.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your permission of stay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at you may be subject to deportation under Article 46 or 68 of the same Act.

-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귀하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your permission of stay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89-2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at you may be subject to deportation under Article 46 or 68 of the same Act.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년 월 일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 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 건의 기준·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범위 등) ①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u>법</u> <u>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u> <u>프로그램을</u>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 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 람	3. ----- <u>법</u> <u>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u> <u>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u> <u>로그램”이라 한다)</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 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② ----- ----- -----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1. ~ 5. (생략)

<신 설>

③ ~ ⑤ (생략)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2. (생략)

<신 설>

1. 외교부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그 밖에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 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신 설>

공인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
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
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
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
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
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제2항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
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
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③ ~ ⑤ (생략)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
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
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 5. (생략)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
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
한 프로그램 운영

7. (생략)

② ~ ⑥ (생략)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
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영 제48조제1항제5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외국인--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의5(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
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u>제53조의6</u> (생략)	<u>제53조의7</u> (현행 제53조의6과 같음)
<u>제53조의7</u> (특별사회통합 자원봉	<u>제53조의8</u> (특별사회통합 자원봉

사위원) ① (생략)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제53조의8 ~ 제53조의10 (생략)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53조의7-----
-----.

제53조의9 ~ 제53조의11 (현행 제53조의8부터 제53조의10까지와 같음)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

-----.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법률 및
「선원법」에 -----

6. (생 략)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생 략)

2.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6. (현행과 같음)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

---.

1. -----
----- 경우: -----
-----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 -----
-----.

-----.
가. -----

-----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나. (현행과 같음)

2. -----
----- 경우: -----
----- 수입증지, 신용카드·직불카드 -----

3. ----- 경우: -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u>납입을 증명하는 증표</u>	<u>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u>
---------------------------	--